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공	보
O	上

제1112호 2022. 9. 28. (수)

공 고

제2022-1050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공					
람					

발행 : 부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래전략실 (☎309-4071)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1050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와 부합하지 않는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의 법령적합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법령 인용용어 및 인용조항 현행화(안 제1조~안 제3조)
- 나. 피한정후견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위원회 결격 규정' 삭제(안 제4조~안 제5조)
- 다.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비상설화 정비(안 제6조~안 제9조)
- 라.「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와 중복충돌되는 규정 삭제(안 제10조)
- 마. 조직 개편 사항을 미반영한 규정 정비(안 제11조~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우편번호 46504)
- 2) 연락처 : 전화 051-309-4036, 팩스 051-309-4019,

전자우편 ykh3239@korea.kr

※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 공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기본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전자정부법」 제9조"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ᅙ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mark>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mark>」"를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 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세무2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세무2과"를 "세무1과"로 한다.

제12조(「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각 호의 내용 중 재난수습홍보반란의 "소통담당관"을 "미래전략실"로 하고,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의 "소통담당관"을 "행정지원과"로 하며, 상황관리 총괄반 행정지원팀(1명)란의 "소통담당관"을 "행정지원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u>(환경보전기본계획)</u> ① 구청장은 환경 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제13조 <u>(환경계획)</u> ①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u>환경보전기본계</u> <u>획(이하 "환경기본계획"</u> 이라 한다)을 5년	<u>환</u> 경계획(이하 "환경계획"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환경기본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u>환경계획</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u>환경기본계획</u> 을 수립 또는 변 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u>환경계획</u>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 	④
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홈페이지 기능)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 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4조(홈페이지 기능)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전자정부법」 제9조</u> 에 따른 전자민원 창구(이하"전자민원창구"라 한다) 운영	3.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u>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u>제35</u>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제1조(목적)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u>6항</u>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한정후견인	<u><삭 제></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조(결격사유)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u> 인 또는 파산	1. <u>피성년후견인</u>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제1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 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구성)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12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u>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 <u><삭 제></u>
제16조(회의) ① (생 략)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생 략)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u>「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u> 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당 등)

제8조(「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⑥ (생 략)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	
<u><신 설></u>	음)	
	<u> </u>	

제9조(「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 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 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 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개최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 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 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 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제2조(기능)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각 부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 과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u><삭 제></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1조(「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 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1. 당연직위원 : 재무과장, <u>세무2과장</u> , 공 원녹지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1 <u>세무1과장</u>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담당업무별 주관 부서를 구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 며 운영관리한다.(개별주택가격 업무는 <u>세</u> <u>무2과</u> ,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 에서 주관한다.) ②・③ (생 략)	제7조(간사 등) 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고